전라북도교육청 /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

단 체 협 약 서

2016. 6. 15.

전라북도교육청 /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

〈차 례〉

전 문 1

제1장 총 칙 1

제1조【적용범위】 1
제2조【성실의무】 1
제3조【협약존중】 1
제4조【부당노동행위 금지】 1
제5조【자치법규 제·개정】 2

제2장 노동조합 활동 2

제6조【노동조합 활동보장】 2
제7조【노동조합비 일괄공제】 3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대한 처우】 3
제9조【시설 및 편의 제공】 3
제10조【노동조합 문서이첩·홍보】 4
제11조【통지할 사항】 4
제12조【친절한 정보공개】 5
제13조【노동조합 교육행사 지원】 5

제3장 노사단체 협의 및 합의 5

제1절 노사협의회 5

제14조【노사협의회 구성·운영】 5

제2절 단체교섭 6

제15조【단체협약 충돌방지】 6
제16조【단체협약 성실이행】 6
제17조【단체교섭 운영】 7

제3절 노사간담회 7

제18조【노사간담회】 7

제4장 인사제도 7

제1절 정원관리 7

제19조【기본원칙】 ····· 7
제20조【정원배치】 ····· 8

제2절 인사관리 ····· 8

제21조【기본원칙】 ····· 8
제22조【인사 정보공개】 ····· 8
제23조【결원보충】 ····· 8
제24조【순환보직】 ····· 9
제25조【근무성적평정 개선】 ····· 9
제26조【인사발령】 ····· 9
제27조【전보희망제 운영】 ····· 9
제28조【원로공무원 우대】 ····· 9

제3절 승진관리 ····· 9

제29조【기본원칙】 ····· 9
제30조【5급 승진】 ····· 10
제31조【기술직군·관리운영직군 경쟁력 강화】 ····· 10
제32조【계약직 공무원 운영】 ····· 10

제4절 보직관리 개선 ····· 10

제33조【보직관리 규정 개정】 ····· 10
제34조【보직관리 운영】 ····· 10
제35조【가산점 및 포상제도】 ····· 10
제36조【필수 실무요원】 ····· 10

제5장 위원회운영 혁신 ····· 10

제37조【인사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 ····· 10
제38조【학교운영위원회】 ····· 11

제6장 교육훈련 ····· 11

제39조【연수지원】 ····· 11
제40조【교육계획 및 과정】 ····· 11
제41조【기술직 직무교육】 ····· 12
제42조【신규임용 대상자 교육】 ····· 12
제43조【국내외 연수 기회균등】 ····· 12
제44조【연수과정 노동교육】 ····· 12
제45조【전문성 향상지원】 ····· 13

제7장 근로조건 개선 ····· 13

제1절 인권보장 ····· 13

제46조【지방공무원 인권보장】 ····· 13

제2절 행정제도 개선 ····· 13

제47조【감사제도 개선】 ····· 13
제48조【내부 신고자 보호】 ····· 14

제3절 인력배치 개선 ····· 14

제49조【조직인력의 적정배분】 ····· 14
제50조【총액인건비 제도 운영】 ····· 14
제51조【상위직급 확보】 ····· 14
제52조【대체인력 운영】 ····· 14

제4절 행정업무 개선 ····· 15

제53조【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 15
제54조【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 15
제55조【부당행위의 투명성 확보】 ····· 15
제56조【업무분장】 ····· 16
제57조【고유업무 권한강화】 ····· 16
제58조【업무경감】 ····· 17
제59조【학교급식 업무】 ····· 17
제60조【홈페이지 개선】 ····· 18
제61조【직속기관 행정업무 개선】 ····· 18
제62조【공로연수】 ····· 18

제5절 수당제도 개선 ····· 18

제63조【각종 수당 등의 지급 확대】 ····· 18

제6절 근로조건 개선 ····· 18

제64조【근무시간】 ····· 18
제65조【근무환경 개선】 ····· 19

제7절 후생복지 ····· 20

제66조【교직원 수련원 건립】 ····· 20
제67조【여성공무원 복지향상】 ····· 20

제68조【여비지급의 현실화】 ····· 20
제69조【이전비 지급】 ····· 20
제70조【운전직렬의 처우개선】 ····· 20
제71조【건강 및 치료비 지원】 ····· 21
제72조【공무원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실 설치】 ····· 21
제73조【도서벽지 학교의 근무환경 개선】 ····· 21
제74조【후생조건 확충】 ····· 21
제75조【직장생활 활성화】 ····· 21
제76조【법률지원 등】 ····· 21
제77조【장례 실시】 ····· 21
제78조【퇴임식 개최】 ····· 21

제8장 학생교육 복지 ····· 22

제79조【학교도서관 활성화】 ····· 22

제9장 중앙정부 건의사항 ····· 22

제80조【초·중등교육법 개정 건의】 ····· 22
제81조【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 22
제82조【자녀 대학 등록금 수당화】 ····· 22
제83조【장애수당 신설】 ····· 22
제84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건의】 ····· 22
제85조【운전직렬 운전업무 수당 인상】 ····· 23
제86조【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증액 건의】 ····· 23
제87조【초과근무수당 지급 현실화 건의】 ····· 23

제10장 부 칙 ····· 23

제1조【유효기간】 ····· 23
제2조【효력유지】 ····· 23
제3조【협약갱신】 ····· 23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 23
제5조【준용】 ····· 23
제6조【이행】 ····· 23
제7조【효력】 ····· 24
제8조【협약의 보관】 ····· 24
제9조【해설서 작성】 ····· 24

전 문

전라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과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지부,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증진 및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성실의무】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제3조【협약존중】 ① 협약사항 이행과정에서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한다.

② 교육감은 협약 체결시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존의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기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이 도교육청에서 제정하는 제반 규정 및 지침과 상충될 경우에는 협약을 존중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제4조【부당노동행위 금지】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조합의 권위와 신용을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2.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의 임원과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위 제1항 각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조사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③ 교육감은 구성원을 달리하는 각 노동조합을 차별 대우하는 행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타 단체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교섭, 정책업무협의회 등을 할 경우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타당한 반대의견이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한다.

1. 각급학교 행정실 소관업무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조합원의 업무 관련사항
2. 조합원의 인권보장, 근무조건, 후생복지 관련사항

제5조【자치법규 제·개정】 ① 교육감은 교육감이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 및 훈령 등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법률에 위배되는 인사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개정하고, 위법한 규정 등의 적용으로 노조전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무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의 제·개정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6조【노동조합 활동보장】 ①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조합원이 적법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인사 및 보직관리상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선출직 임원의 전보인사 발령시 전보희망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은 단위기관의 업무분장에 노동조합 관련 업무분장과 조합원이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장한다.

④ 교육감은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과 노동조합 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복무관리를 하도록 한다.

1. 단체교섭 참석
2. 노·사간에 개최하는 각종 협의회 참석
3. 대의원대회 참석(본부, 지부 단위)
4. 임원회의 참석(전국 및 도 단위의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처·국장의 공무원 단체의 연합회의 참석)

* 1·2호는 공가, 3·4호는 여비 부지급 출장처리

⑤ 교육감은 국회(의원) 주관 회의, 정부 부처와 협의체 구성 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자는 출장으로 처리한다.

⑥ 교육감은 노사를 대표하여 상견례, 면담, 단체협상 등은 공문으로 통보하고 일과시간 내에 진행하며, 일과시간 이후에는 노동조합과 비공식 접촉을 하지 않는다.

⑦ 교육감은 주요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⑧ 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 지역별로 학교의 동·하계휴가 중 각 2시간 조합원 연수 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⑨ 교육감은 소속기관에서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본부 또는 지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⑩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전임자 또는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제6조 제4항 각호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의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7조【노동조합비 일괄공제】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장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월정률(액) 조합비를 매월 일괄 납부받고자 할 경우 사전에 조합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지출관(학교장)에게 제출(최초 1회만)하여야 하며, 급여지급 기관장은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 지급일로부터 3일(휴무일 및 공휴일은 제외)이내에 조합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며, 조합원이 타 기관으로 전보될 경우 조합비 공제관련 서류를 전보된 기관으로 통보한다.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대한 처우】 ① 전임자는 조합대표의 추천과 교육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 동의를 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복직 시 동일 지역 또는 동일 급지 이상으로 보직하도록 한다. 단, 복직 당시 동일 지역 또는 동일 급지 이상의 지역에 결원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 전임자임을 이유로 신분·인사·후생복지(승급, 승진, 연금, 의료보험 등)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④ 교육감은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 맞춤형복지제도의 모든 혜택을 각급학교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교육감은 전임기간(휴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9조【시설 및 편의 제공】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 조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회의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행정·연수기관의 장소, 통신 및 방송망 등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사무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비품 등을 관련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④ 도교육청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노동조합 배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감과 소속 기관에 각 노동조합의 공문함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 도교육청과 소속기관 해당 부서의 공문함 이용을 적극 협조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교육감과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노동조합이 발행한 공문에 첨부한 홍보물을 해당기관이 보유한 팩스 또는 전자문서, 공문함으로 일괄 송신하고자 노동조합에서 협조 요청하는 경우 해당부서에서 협조하도록 한다.

⑦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전북교육가족을 대상으로 교육발전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설문조사 기능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전북교육포털 JBEdu Mail의 개인별 저장 공간을 500MB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에 한하여 JBEdu Messenger를 활용하도록 하고 팔로우 수를 8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제10조【노동조합 문서이첩·홍보】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도교육청에 발신한 문서는 문서 등록을 해야하며 회신을 요구하는 문서일 경우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회신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각급기관과 부서의 홍보 게시판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발송한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통지할 사항】 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상호 문서로 통지한다.

1. 교육감이 통지할 사항
   가. 각종 조례, 교육규칙,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나. 지방공무원의 정기전보 인사에 관한 사항
   다. 각종 교육통계연보, 교육수첩, 교육행정자료 등의 간행물
   라. 각급학교에 보내는 교원단체와 관련된 공문서

마. 교육감 및 소속기관 조직기구표

바. 교육청이 책자로 발간한 각종 교육계획 또는 업무편람

사.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표

아.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사업 설명서, 예·결산서

자. 주요 업무계획, 단체협약 해설서(타단체), 예산편성지침, 예·결산서

차. 각급 소속기관에 시행한 노동조합 관련 공문

카. 협약 이행점검 자료

2. 노동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규약의 변경

나. 노동조합 임원 명단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에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명단을 수집·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친절한 정보공개】 ① 노동조합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목적을 제시하고 필요한 교육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노동조합 사이에 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간 최대한 협조한다.

제13조【노동조합 교육행사 지원】 교육감과 소속기관은 지방공무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행사, 연수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노동조합에는 지방공무원의 참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노사단체 협의 및 합의

제1절 노사협의회

제14조【노사협의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점검, 교육행정현안, 노동조합 활동 등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노사 같은 수로 하되, 10명 이하로 한다.

③ 노사협의회의 안건은 노사 각각 7일 전에 통보하며,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중 노동조합과 관련되는 사항
2. 지방공무원의 임금, 복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사전 준비, 진행사항의 기록, 사후조치 등을 위한 간사의 운영은 노사가 합의한 노사협의회 운영 절차 합의서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노사협의회 합의내용 및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각급 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하며, 기관장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⑥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공무원노조 시·군지부(회)와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1. 단체협약에서 위임한 사항
2.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3. 기타 교육장의 소관 사항

⑦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근무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정책토론회, 포럼 및 상설 또는 임시기구(협의회, 자문위원회, T/F 등)에 지방공무원의 참여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⑧ 교육감은 정책사업 평가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한다.

제2절 단체교섭

제15조【단체협약 충돌방지】 ① 교육감은 구성원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 중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구성원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안 중 교섭의 적용범위(노동조합 및 조합원)를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공문으로 받도록 하며, 상위 법률 및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이행 실태를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

제16조【단체협약 성실이행】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에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② 교육감은 단체협약 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소속 교직원에게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협약 중 이행이 미진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④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이행점검표를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다.
⑤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점검에 따른 이행점검표가 성실히 작성되도록 지도한다.
⑥ 교육감은 단체협약 불이행 기관에 대하여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소속 기관장이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한다.
⑦ 교육감은 본 협약의 예산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각급학교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17조【단체교섭 운영】 단체교섭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사 양측에 특별한 변경 요구사항이 없는 한 「2014년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한다.

제3절 노사간담회

제18조【노사간담회】 ① 교육감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과의 간담회를 매년 개최한다.
② 교육감은 노사간담회에서 나온 고충과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방공무원의 근로개선에 힘쓴다.

제4장 인사제도

제1절 정원관리

제19조【기본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며 시·군 지역 학교의 학급 및 시설여건, 병설 및 통합 운영 등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모델학교 등 특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교의 행정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 정원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전보희망서 제출마감 10일 전까지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발령 후 교육지원청 재배정 결과를 공개한다.
④ 교육감은 행정실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20조【정원배치】 ① 교육감은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전담할 행정직 공무원이 추가 배치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 연구를 위해 교육정책연구소에 지방공무원 연구인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시설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열시스템, 태양광, 전기 및 급수, 엘리베이터 등의 일정 규모의 설비가 설치된 학교의 경우 관련 직종 시설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2절 인사관리

제21조【기본원칙】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개개인의 근무성적평정·업무역량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인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소속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공정성·형평성·기회균등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모니터링하여 제시한 인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를 인사에 반영한다.

⑤ 교육감은 매년 1월 정기인사 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⑥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임용 후보자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행정직(사무운영직 포함) 공무원 정원이 3명 이상인 기관에 배치한다.

제22조【인사 정보공개】 ① 교육감은 신규임용 발령 등과 같이 수시 인사발령 사항도 가급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사무인계인수를 위하여 인사발령일 기준 7일 전까지 지방공무원의 인사내용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제23조【결원보충】 ① 교육감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 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출산예정자를 매년 조사하고 출산휴가원을 제출한 자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조사하여 연속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휴가·휴직·병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4조【순환보직】 교육감은 같은 직위 또는 같은 유형의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규정에 따라 순환 보직을 실시한다.

제25조【근무성적평정 개선】 교육감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사기앙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무성적평정 확인자가 근무성적 상위 '수' 등급 평정 분포비율이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근무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26조【인사발령】 ① 교육감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등 각급기관의 직종·직렬·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도록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기관 실정에 맞게 보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에 지방교육행정직공무원 발령시 상위 직급자를 행정실장으로 보직 발령 한다.

③ 교육감은 통학차량 운전원을 각급학교에 배치하도록 한다.

제27조【전보희망제 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희망제가 보직관리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직 지역순환 대상자 현황을 전보희망서 제출 공문발송 시 안내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각 시·군지역의 운전직렬의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신규채용에 앞서 결원지역으로의 전보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28조【원로공무원 우대】 교육감은 57세 이상의 지방공무원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1인만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행정실장에 보직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절 승진관리

제29조【기본원칙】 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에 근속승진 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9급은 제외) 승진 임용 시 전보 제한기간이 경과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임 기관에 보직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에 적용하는 가점제도를 개선할 때에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사제도 개선 T/F를 통해 협의한다.

제30조【5급 승진】 ① 교육감은 5급 승진시험 대상자들의 근무실적과 역량평가에서 재직 중 수행했던 업무실적을 공개 검증함에 있어 현행 4년의 업무실적 기술 기간은 6급으로 재직한 전 기간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근무기간이 6급 재직기간 중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승진후보자로 선발한다.

제31조【기술직군·관리운영직군 경쟁력 강화】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운영직군공무원 일반 승진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승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계약직 공무원 운영】 교육감은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비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제4절 보직관리 개선

제33조【보직관리 규정 개정】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시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② 교육감은 인사업무를 담당한 보직자에 대하여는 현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보직하도록 노력한다.

제34조【보직관리 운영】 교육감은 정년퇴임을 1년 이하 남긴 지방공무원이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유보신청을 한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35조【가산점 및 포상제도】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포상 대상자 선정 시 각 직종·직렬 간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36조【필수 실무요원】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필수 실무요원을 임용한다.

② 교육감은 필수 실무요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위원회운영 혁신

제37조【인사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추천한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교육장은 지방공무원이 참여하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한다.

제38조【학교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간사가 작성하도록 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개조식으로 작성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되어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관련 지침 외 불필요한 사항을 무리하게 심의하기 위해 행정적 지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6장 교육훈련

제39조【연수지원】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노사관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연수 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교육기관 위탁 및 실기교육 등 구성원 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노동 관련 연수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교육 위탁 및 실기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력 향상과정' 등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을 개설하도록 노력한다.

제40조【교육계획 및 과정】 ① 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은 매년초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② 교육감은 신규임용예정자 및 재직자에 대한 연수 시 노동·노사관계 과목을 편성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소방·시설·전기·방송 등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업무향상을 위하여 연금·공제업무 등과 같은 종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수자에 한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시설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과정의 증설 및 현장실습시간 도입을 추진한다.

⑥ 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심의회 개최 시 노동조합의 의견이 필요한 과정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제41조【기술직 직무교육】 교육감은 기술직 공무원의 교육을 각호와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지방공무원의 연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기술직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해당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설관리, 조리, 운전직렬 지방공무원의 직무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사이버연수 개설시 특정 직렬이 수강신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6. 관리자과정 연수 및 기술직 대상 연수계획 수립 시 상호 직무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42조【신규임용 대상자 교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합격자는 임용 전에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신규 임용하여야 한다.

제43조【국내외 연수 기회균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내연수, 국외연수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은 지방공무원 국내외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직종, 직렬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정하도록 하며,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비로 국외유학을 하고자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국내외 연수 참가팀 선발과정에 심사위원을 다양화 하며 공개심사를 하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감은 전북교육자치와 관련한 교육행정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참가자를 공개모집 하도록 한다.

⑥ 국외연수 기준은 국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44조【연수과정 노동교육】 ① 교육감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신규 및 실무자 과정과 공무원 노사관계 관련 과정, 3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 등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의 강사 참여 요청이 있는 노동조합에게는 강사 참여를 보장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월 1회 2시간 이내로 조합원에 대한 자체연수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자율연수 활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민간교육훈련기관 사전교육 신청제에 따라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에 따른 훈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5조【전문성 향상지원】 ① 교육감은 본청에 등록된 지방공무원 직장동호회 및 학습동아리 및 행정 연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직장동호회, 학습동아리 참여에 있어 지방공무원의 자유로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장은 지방공무원 간 소통을 통한 업무협력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내 전 직렬의 지방공무원이 참여하는 권역별 동아리를 결성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지도한다.

제7장 근로조건 개선

제1절 인권보장

제46조【지방공무원 인권보장】 ① 교육감은 성희롱 예방 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안발생 시 엄중 처리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여성 지방공무원이 다과 등 차 접대를 강요받지 않도록 본청 및 소속기관을 지도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지방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사요구가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구성원 간 서로 인격이 존중될 수 있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주무관" 호칭이 사용되도록 노력하며, 각급 학교에서 행정실장을 제외한 차석, 계장 등 임의 직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⑤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소속 모든 기관의 주차장에 관용차 전용, 민원인, 장애인, 경차를 제외한 특정 주차구역 지정을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한다.

제2절 행정제도 개선

제47조【감사제도 개선】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2월과 3월에는 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국회, 도의회 등에 기 제출한 자료는 가급적 교육지원청이 데이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원 요구가 있을 시 국회, 도의회와 협의하에 표집하여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예방감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
④ 교육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부당 명령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불복종한 행위는 정상 참작하도록 한다.
⑤ 교육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에 대한 만족도, 감사 공무원의 친절도, 불필요한 자료 요구 여부,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감사 공무원의 전문성, 감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관련 법규 준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과는 지속적인 감사기법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⑥ 교육감은 상급자의 불법·부당 행위로 인해 하급자가 부당하게 동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교육감은 학교 회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2의 나항에 의거 학교 회계감사 시 사업담당자의 경중을 감안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감사를 실시한다.

제48조【내부 신고자 보호】 ① 교육감은 일선 교육 현장의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 노력하고, 노동조합이 부정·부패를 신고하고 감사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내부 신고자의 신변을 최대한 보호하고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제3절 인력배치 개선

제49조【조직인력의 적정배분】 ① 교육감은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에 관계법령이 정한 사서직원이 적정하게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도서관 협력망 구축을 위해 학교 도서관 지원센터 확대 설치를 위해 노력한다.

제50조【총액인건비 제도 운영】 교육감은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추천한 1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1조【상위직급 확보】 교육감은 타직렬과 형평성 있게 기술직군과 관리운영직군의 상위직급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52조【대체인력 운영】 ① 교육감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규정한 우선 고용직종에 해당하는 학교경비 업무 등의 신규 및 대체인력 고용수요가 발생한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서 6개월 만에 감축인사 전보가 최소화되도록 감축 수요예측을 철저히 해야 하며, 행정실의 지방공무원이 합리적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제4절 행정업무 개선

제53조【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예산의 집행품의,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합리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계약사무처리 지침 변경으로 지방공무원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한다.
⑤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산출기초에 교육공무직 인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⑥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직무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⑦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학교회계 사업 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집행품의, 지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⑧ 교육감은 각급학교 운영에 불요불급한 도서·신문 등의 구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54조【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업무추진 성격의 집행내역 중 각종 협의회비 납부 등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예산 운영과 관련된 지침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 수렴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업무용 핸드폰 개설, 카메라, 캠코더, 기타 기기들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제55조【부당행위의 투명성 확보】① 교육감은 각종 성금 모금 시 지방공무원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이 상품권, 입장권 등을 직장 내 다른 공무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하도록 하거나 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56조【업무분장】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분장과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지도하고, 업무분장 시 직원 간 업무량과 난이도 및 업무 성격을 고려해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각급학교 교무업무,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이 행정실로 분장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사무분장에 대하여 행정실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감은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각급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분장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여름·겨울방학 전에 학교시설물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관리 자료의 내용을 보안하여 안내하고 홍보한다.

⑤ 교육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위해 관련 행정업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⑦ 교육감은 본청 및 소속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나 차별적인 언어로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⑧ 교육감은 학교의 재난안전훈련 및 소방훈련 시 훈련계획 수립, 훈련 시행은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직원 전체 협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⑨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과 먹는물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에 명시된 학교 환경위생 관리와 식품위생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분장할 시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⑩ 교육감은 교육목적으로 구매한 학교 물품에 대하여는「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장이 전용자 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제57조【고유업무 권한강화】 ① 교육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학교) 별 실정을 고려하여 외부 용역(예산 집행)이 가능한 업무는 외부 용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기안 및 품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권장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발간실, 인쇄실, 목공실 등이 있는 경우,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하여 교육시설관리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학교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58조【업무경감】 ①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 경감 대상 업무가 상위법령과 지침, 그리고 원칙에 반하여 각급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교통안전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이 지방공무원을 통학차량의 안전요원으로 동승시키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각종 보고 및 통계자료 요구 시 충분한 보고 기한을 두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공문에 표시하여 보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각급학교에서 제출하는 보고 문서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⑤ 교육감과 교육장은 각급학교에 분야별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첨부하여 공문 시행 시 주요 항목의 요약, 사례별 문답 형태의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고, 온라인 공간 운영을 통하여 각종 지침 자료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며,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업로드 하도록 하는 등 공문서 감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각급 기관장이 관용차량을 공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⑦ 교육감은 일선 학교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학 및 급식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⑧ 교육감은 단위학교에서 교직원 개개인의 맞춤형복지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행정실에서 일괄 구매하지 않도록 한다.

⑨ 교육감은 교육지원청과 관련이 없는 외부행사(시험감독 등)에 지방공무원의 동원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⑩ 교육감은 학교장 장기 부재시 징수 및 원인행위를 대결할 수 있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⑪ 교육감은 대상학교 및 지원금액이 확정된 목적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⑫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인원을 배치하는 각종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9조【학교급식 업무】 교육감은 2·3식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지방공무원 근무환경에 대한 의견을 연 1회 이상 수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제60조【홈페이지 개선】 ① 교육감은 본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에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메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본청 홈페이지에 탑재한 자치법규는 목록에서 해당법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본청 홈페이지 메뉴인 참여마당·알림마당·전자민원창구 등의 하위 메뉴에서 방문자가 게시글 제목의 본문을 열람할 때 본문 하단에 당해 메뉴의 글 제목이 표시되도록 하고, 게시글 제목의 목록수도 10개, 30개, 50개 단위로 선택하여 신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각급기관 및 학교의 홈페이지 사무분장 또는 직원 소개란에 6급 이하 직원의 직급을 주무관으로 표기하도록 지도한다.

⑤ 교육감은 본청 홈페이지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참여마당, 알림마당 등 각종 코너와 JB메신저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61조【직속기관 행정업무 개선】 교육감은 지역 교육문화회관이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의 교육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창의적 교육복지 지원업무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62조【공로연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중 1년 이하의 정년퇴직 예정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사회적응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6개월의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5절 수당제도 개선

제63조【각종 수당 등의 지급 확대】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 행정실 업무수당 신설에 대한 의견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한다.

② 교육감은 재해·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기관장이 시간외 근무를 명령할 경우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발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절 근로조건 개선

제64조【근무시간】 ① 교육감은 현행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근무시간을 준수하게 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학교 행사지원, 방과후 및 돌봄, 종일반 운영, 야간학습, 토요스포츠활동 등으로 인해 지방공무원에게 과도한 근무명령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하여 근무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을 지정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자체적인 유연근무제를 보장하되 본인의 근무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강제적으로 유연근무를 지시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65조【근무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학교 신·증·개축시 최소 6학급 이하 0.5실, 6학급 초과 1실 이상의 행정실을 확보하고 기존학교는 여유교실 등을 활용하여 서류함 비치공간, 사무기기 설치공간, 탕비실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행정실이 확보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실정에 따라 문서실, 인쇄실이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권장한다.

③ 교육감은 여유 공간이 있거나 실 배치 조정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 관리실과 가까운 곳에 문서 보관실을 확보하도록 각급학교에 지도한다.

④ 교육감은 소속기관 사무실의 조도를 법령에 의한 조도로 유지하고, 냉·난방 시설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성능보존이 어려운 시설부터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⑤ 교육감은 학교단위로 운영되는 교원 편의시설 명칭을 교직원 편의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⑥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교직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책걸상,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교체 및 시설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⑦ 교육감은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도내 각급 공립학교에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⑧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출입문 개폐를 지방공무원이 전담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⑨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주용역 등 지역 및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당직이 실시되도록 지도한다.

⑩ 교육감은 각급기관에서 직원의 좌석 배치 시 비(非)행정 직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⑪ 교육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기준에 준하는 근무환경과 시설을 유지하도록 한다.

⑫ 교육감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시설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과 후 업무전용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⑬ 교육감은 교육문화회관(공공도서관 포함) 도서관 열람실 야간 개관에 따라 18시 이후부터 각 교육문화회관(공공도서관 포함)에서 정한 열람실 이용 종료시까지 야간경비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한다.

제7절 후생복지

제66조【교직원 수련원 건립】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교직원수련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수련원의 완공시까지 한시적으로 도내 수련시설과의 제휴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67조【여성공무원 복지향상】 ① 교육감은 여성공무원이 관련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보건휴가, 육아시간, 생리기, 산부인과 진료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 거점지역에 교직원의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적정 인원 이상의 수요가 있을 때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이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 자녀당 1회에 한해 출산축하금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여성공무원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한다.

⑤ 교육감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한다.

제68조【여비지급의 현실화】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각종 출장비를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제69조【이전비 지급】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이전비와 국내 가족 여비를 지급한다.

제70조【운전직렬의 처우개선】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운전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로 관용차량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교육감은 향후 통폐합 학교에는 직영차량으로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운전원의 통학차량 운행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반드시 단설유치원에 직영차량 배치와 함께 학교의 전세차량을 축소하고 직영차량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제71조【건강 및 치료비 지원】 ①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전문 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소속 교직원의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특근매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제72조【공무원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실 설치】 ① 교육감은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각급기관(학교)의 시설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휴게공간을 확보되도록 하고, 기관(학교) 신축 시에는 교직원 휴게공간을 설계에 반영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신·개축 시 직원용 샤워실을 설치하고,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연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제73조【도서벽지 학교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감은 출·퇴근이 불가능한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택을 확충하고, 수선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제74조【후생조건 확충】 ① 교육감은 각급 소속기관에서 시설물관리·조리·운전·기계·전기 등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연 2회 피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과 관련하여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포인트 배정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해 공무원연금법 제69조의 2의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을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노력한다.

제75조【직장생활 활성화】 교육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을 진흥하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제76조【법률지원 등】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소신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법적 자문을 원하는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문하도록 협조한다.

제77조【장례실시】 교육감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에서 유족과 협의하여 장례를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78조【퇴임식 개최】 교육감은 퇴직(정년, 명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별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하반기 퇴임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장 학생교육 복지

제79조【학교도서관 활성화】 ①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구축과 교직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② 교육감은 모든 학교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한다.

③ 교육감은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도서관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인력·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9장 중앙정부 건의사항

제80조【초·중등교육법 개정 건의】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9항을 신설하여 학교 행정실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한다.

제81조【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연한 단축과 교육공무직 유사경력이 100% 인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 시 건의한다.

제82조【자녀 대학 등록금 수당화】 교육감은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막대한 학자금 지출로 인한 생활 안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직무에 충실하도록 단계적으로 대학생의 학자금을 학비보조수당화 하도록 건의한다.

제83조【장애수당 신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 공무원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한다.

제84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건의】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근속가호봉제 신설과 승진 시 호봉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조직 편제와 업무형태를 고려한 특수업무수당 항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 학교시설공사 현장감독과 안전점검 및 하자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위험수당 신설에 대한 의견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한다.

제85조【운전직렬 운전업무 수당 인상】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 운전직렬 운전업무수당 인상에 대한 의견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한다.

제86조【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증액 건의】 교육감은 병설유치원에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총액인건비 증액을 건의한다.

제87조【초과근무수당 지급 현실화 건의】 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4시간 이상 제한 규정 삭제를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한다.

② 교육감은 정부에 비상근무자, 축제 및 체육행사 등 각종행사 동원자,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에 학생인솔자로 참가한 자 등에 대해 최대 8시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 개선을 건의한다.

③ 교육감은 시간외근무수당 중 정액분을 기본급에 포함하도록 건의한다.

제10장 부 칙

제1조【유효기간】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기존 협약의 효력이 지속 된다.

제3조【협약갱신】 도교육청과 노동조합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새로운 협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중 어느 일방이 새로운 협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협약은 다음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본 협약은 경제적·사회적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본 협약과 동일하다.

제5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 및 노동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이행】 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 교육감은 반기별로 본 협약 사항에 대해서 그 이행상황을 노조에게 통보하고 미이행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감은 본 단체협약의 내용 중 도교육청이 아닌 타 기관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학교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은 적극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제7조【효력】 본 협약 체결 후 도교육청이나 노동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양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8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협약서 5부를 작성하며 노동조합과 도교육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1부를 신고한다.

제9조【해설서 작성】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하는 협약 사항에 대해 소관 업무담당 부서와 해설서를 작성하여 각급 기관에 배포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2016. 6. 15.

전라북도교육감
김 승 환

한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
지부장 임 일 린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기 웅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곽 석 환